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기간제근로자(비서) 채용 공고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비서)를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2월 2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채용구분	인원	주요담당업무	근무예정부서
기간제근로자 (비서)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임위원(이상)의 비서○ 행정업무 지원 등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2. 근무조건

- 계약기간 : 채용일('26. 1월 초)로부터 '26. 6. 16.까지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 활동 시까지 연장가능
 - ** 연장 시 위원회 활동기간이 만료될 경우 활동기간까지만 근무
- 보 수 : 월 2,304,000원(기본임금 2,164,00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
 - ※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보험료는 월 보수에서 차감
 - ※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①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할 수단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2007.12.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응시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근로계약 체결예정일('26. 1월 초) 기준 바로 근무 가능한 자

②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요건(해당자에 한함)	
기간제 근로자 (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이상의 비서 및 사무보조 경력 보유자(연차별 차등 우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행정지원업무 유경험자 ○ 비서 관련 자격증 보유자 ○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보유자 (아래 자격증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정보처리산업 기사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 '12.1.1부터 워드프로세서 2급, 3급 자격증이 폐지됨에 따라 '11.12.31까지 취득한 자격증은 2급 이상으로, '12.1.1. 이후 취득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은 등급 구분 없이 인정

4. 시험방법

①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지원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한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적격여부만 판단하여 서류전형 생략가능
- 경력·자격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을 경우, 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함

② 2차 시험 : 면접전형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평정요소) ①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국가기관 근무자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평가 등급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를 합격자로 결정
 - ※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면접자는 불합격 처리

5.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25.12.2.(화) ~ 12.10.(수)	▪ 나라일터, 워크넷, 이태원특조위 홈페이지
원서접수	'25.12.8.(월) ~ 12.10.(수)	▪ 전자우편(leetaewon111@korea.kr)으로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5. 12. 17.(수) 예정	▪ 나라일터, 이태원특조위 홈페이지
면접심사	'25. 12. 24.(수)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상세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및 근로계약체결	'26. 1월 초	▪ 나라일터, 이태원특조위 홈페이지

6.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5.12.8.(월) ~ 12.10.(수) 18:00
- 접수방법 : 관련 서류는 e-mail로만 접수
 - e-mail : leetaewon111@korea.kr
 - ※ e-mail 제목은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 제출(비서-홍길동)"로 기재
 - ※ 전자우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메일 도착분에 한함

7.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아래의 번호 순서대로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

서류	비고
I. 공통사항(필수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하되,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첨부 시에만 인정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 A4 2매 이내로 작성(형식·구성 자유)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자필 서명 필수
II.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5. 경력(재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비상근 근무시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예: 주40시간)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p>※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p>
6. 자격증 사본 1부	· 최종시험(면접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며, 국내 자격증만 해당
7. 학위(졸업)증명서 사본 1부	· 심사위원 제척·기피 등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 학교명 등은 공개되지 않음

8. 유의사항

- ①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②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02-2650-1066, 106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번호	응시기관	응시직종	생년월일	성 명	연락처
※ 담당자 기재					

제출 서류에 ✓ 표시 후 **아래의 순서대로 스캔한 파일을 제출**

※ 공고문에서 요구하고 인정되는 서류 이외의 자료 제출 사양

목 록	제출	미제출
< 공통사항, 필수제출 >		
1. 응시원서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5. (경력) 경력 증명서 (부) (경력기간 : 월)		
6. (자격증) 자격증 사본 (부) (자격증이름 :)		
7. 학위(졸업) 증명서		

응시원서

본인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응시자 (서명)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응시직종 (응시분야)	비서	성별	남/여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전자우편			
전 화(자택)		휴대전화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응시직종

2025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이력, 장점,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작성요령

《주 의 사 항》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 및 이력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1.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기관 : 응시하고자 하는 기관을 정확히 기재
3. 응시직종(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직종을 기재함
※ 비서
4.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도로명 주소)을 정확히 기재
5.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6.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7. 자기소개서 :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이력, 장점,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